



17 감사부 보고

제106회기 감사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오광춘
서 기 황석산

1. 조 직

- 1) 임 원 : 부장 오광춘, 서기 황석산, 회계 김경환, 총무 이영민
- 2) 부 원 : 이종순 고정식 강희섭 박영배 서성진 정영교 김영섭 이해중 박종의 최동식 변충진 백용영 최병욱 한진희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1. 10. 14(목)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6회기 감사부 팀장과 팀원 조직을 유인물 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제106회기 감사부 운영의 건을 유인물 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제106회기 감사부 워크숍은 주후 2021년 11월 15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강사선정 및 일정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④ 총회 정기(중간)감사 기간 중 행사를 하지 않도록 피감 부서에 통보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2. 8. 17(수) 11: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미감 부서는 팀별로 감사하기로 하다.
 - ② 제106회 감사 보고서는 임원회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③ 8월 31일까지 연장 감사를 하기로 하다.

2)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1. 2. 23(수)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중간감사 일정을 3월 14일(월)~18일(금) 확정하기로 하다.
- ② 감사 팀을 구성하기로 하다.
1팀장 서성진 팀원: 백웅영, 이종순 / 2팀장 이해중 팀원: 변충진, 최병욱
3팀장 정영교 팀원: 박종의 / 4팀장 고정식 팀원: 한진희
5팀장 김영섭 팀원: 강희섭 / 6팀장 최종식 팀원: 박영배
- ③ 피감 부서 팀 배정은 임원회에서 정하기로 하다.
- ④ 피감 부서의 대면 및 서면 감사를 별지에 첨부하기로 하고, 피감 부서에 통보하기로 하다. 정회하기로 하고 총무 이영민 목사의 기도로 마치니 당일 12시 이더라 속회 : 김영섭 장로의 기도로 속회하니 당일 12시 50분이더라
- ⑤ 제105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를 총회장에게 재청원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2. 8. 2(화)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정기감사 일정을 유인물대로 받고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정기감사는 8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개회예배로 시작하여 17시까지 진행하며, 8월 9일(화)~8월 12일(금)까지는 9시 30분부터 시작하여 17시까지 진행하기로 하다.

3) 임원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 9. 30(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감사부원으로 3명(김영구 장로, 김정수 장로, 정계규 목사)이 총회규칙 제9장 32조 2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타 위원회에 위원을 겸할 수 없다.”에 맞지 않게 공천되었기에 총회임원회에 감사부원 자격여부를 질의하기로 하다.
- ② 감사부 전체모임은 10월 14일(목) 오전 11시에 총회본부에서 모이기로 하다.
- ③ 감사부 워크숍은 11월 15일(월) 오전 11시 하기로 하고 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하다.
- ④ 감사부 팀장은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하다.
1팀장 : 서성진 목사 2팀장 : 이해중 장로 3팀장 : 정영교 목사
4팀장 : 고정식 장로 5팀장 : 김영섭 장로 6팀장 : 최동식 목사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11. 3(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감사부 워크숍은 총회 임원회의 감사부원 보선 통보 이후 워크숍을 하기로 하다.
- ② 워크숍 책자를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2. 1. 4(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총회 감사부 워크숍을 주후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워크숍 책자를 검토하고 자구 수정하기로 하다.
- ③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요청을 총회장에게 공문 발송기로 하다.
- ④ 제105회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회의록 및 선거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105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 ⑤ 총회 상비부, 특별위원회에 운영 관련을 총회 예산(예산 시행지침)대로 운영되었는지 집중해서 감사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2. 1. 13(목) 09: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총회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 되었는지 감사하기로 하다.
- ② 총회 선거규정의 변경사항(5회기분)을 기획행정실에 요청하기로 하다.
- ③ 제105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다
가. 기간 : 2022년 2월 21일(월)~24일(목)
나. 장소 : 총회회관
다. 인원 : 임원 4명, 부원 6명
 - a. 총괄 : 감사부장 오광춘 장로
 - b. 선관위 임원회, 관리분과 : 황석산, 서성진, 백웅영
 - c. 재정 : 김경환, 이해중
 - d. 규정 : 이영민, 강희섭
 - e. 심의분과 : 정영교, 고정식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2. 6. 2(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총회 정기감사를 2022년 8월 8일(월)~12일(금) 기간에 하기로 하다. 연장감사는 8월 30일(화)~31일(수) 하기로 하다.
- ② 기관 및 위원회에 7월 31일까지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다.
 - 가. 총회세계선교회
 - a.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해외 방문 지출 내역
 - b. 총회세계선교회 선교주일 사업계획서, 입출금 내역, 결산보고
 - c. 화성요양원 대여비 반납 확인서
 - d. 외부감사 보고서 (3년 자료)

- e. 중간감사 시정 및 개선 사항 보고서
 - 나. 기독교신문구조조정처리위원회 구조조정 결과 보고
 - 다. 은혜로운 동행기도회
 - a. 은혜로운 동행기도회 총회예산 지출내역
 - b. 후원금 입금 및 지출 내역
 - c. 미래자립 목회자를 위한 예산 및 지원 내역
 - 라. 총회신학원복원 및 편목과정소위원회 편목과정 수입 지출 내역
 - 마. 유지재단 유지재단 임대료 수입내역
- ③ 차기 임원회의는 7월 5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22. 7. 4(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정기 감사 팀을 다음과 같이 조직하다.
 - 1팀장 : 서성진 팀원 : 변충진 / 2팀장 : 이해중 팀원 : 백웅영
 - 3팀장 : 정영교 팀원 : 최병욱 / 4팀장 : 최동식 팀원 : 박영배
 - 5팀장 : 고정식 팀원 : 한진희 / 6팀장 : 김영섭 팀원 : 이종순
- ② 정기감사 배정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고 피감 부서에 감사일정을 통보하기로 하다.
- ③ 총회세계선교회에 출석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가. 출석자 : 총회세계선교회 총무, 행정사무총장, 선교사무총장
 - 나. 일 시 : 2022년 8월 8일(월) 13시 30분
 - 다. 장 소 : 총회회관
- ④ 차기 감사부 임원회의는 8월 2일(화) 오전10시 30분, 임원 및 팀장 연석회의는 동일 오전 11시 30분에 하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22. 8. 2(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정기감사 일정을 유인물대로 받고 진행하기로 하다.
- ② 기독교신문구조조정처리위원회 위원과 대면하여 현재까지의 경과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지적사항을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보고 하기로 하다.
- ③ 전국남전도회 회장 후보의 추천권에 관한 사항을 전국남전도회 임원들과 대면하여 경위를 청취하고 해당 후보자인 반00 장로의 건에 관련하여 해당 노회에 “특별감사처리 요청의 건”(본부 제103-693호)에 관한 답변을 질의하기로 하다.



제106회 정기감사 지적사항

□ 상비부

1. 정치부

- 1) 총회임원회가 특별위원을 거의 선정하여 정치부 역할이 많이 위축됨으로, 다시금 정치부가 위원 선정 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에 건의 할 것.

2. 헌의부

- 1) 재판 건으로 접수된 상설 사건에 대하여 매뉴얼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요구됨.
- 2) 헌의부는 총회 규칙에 의거 총회로 제출되는 서류를 살피되, 내용이 아니라 서류 자체가 적합한지 여부와 제출 절차의 적법성을 살피는 부서임. 총회 헌법과 규칙, 장로회 회의규칙에 철저해야 함에도 일부 헌의안에 대하여는 헌의부 자체의 직무와 권한을 유기하거나, 일사부재리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처리한 것이 발견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할 것.

3. 재정부

- 1) 재정부는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특별, 상설위원회의 추경 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 심의하여 예비비 안에서 추경할 것.
- 2) 특별지원금은 헌의에 의해 예산을 세우고 회기 중 접수되는 재정 청원은 반려하거나 각 담당 부서로 이첩할 것. 또한 개인이나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청한 건은 지원하지 말 것.
- 3) 각 부서 워크숍 진행에 관련하여 재정부의 지침보다는 총회임원회에 건의하여 지침을 세울 것.

4. 규칙부

- 1) 총회산하기관 위원회의 정관과 규정 등을 심의 하는 것은 규칙부의 고유 권한이기에 총회 서기나 본부에서 행정적 판단으로 규칙부로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부에 이첩하여 규칙부가 판단하여 처리 할 것.
- 2) 규칙부가 회의비 예산 부족 이유로 정관 심의가 규칙부 임원들 소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행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총회 전 소집하여 심의 검토하고 결의해야 하기에 규칙부 예산 600만원으로는 부족함. 최소 실행위원회 2회, 전체회의의 1회를 모일 수 있도록 재정부에 회의비 증액을 요청 할 것.

5. 고시부

- 1)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글로벌 과정 학생들에게 강도사 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것.(영어시험 실시 및 그 시기를 군목 강도사 고시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2) 미주편목 강도사 고시에 대한 문제점(특별고시) 개선 요함.
 - 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자 서류는 사전에 파악하였어야 함.
 - 나) 해외 편목과정에서 고시 응시자 수가 적으면 한국에 와서 시행 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고시부 예산 부족으로 편목 위원회에서 지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지원인원(전형료)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함.
- 3) 학생 수가 줄어 전형료 수입이 줄고 있는데 고정적인 고시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절감하기 위

한 고시부 내부적인 대책이 필요함.

- 4) 특별편목 강도사고시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를 차후 일반강도사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것은 불합리함. 총회가 결의하여 본교단 소속 목사 자격을 주기 위해 교육하였으므로 일반강도사고시에 준하여 재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노회록검사부

- 1) 전국노회 노회록 관리는 중요한 사항임으로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 교육훈련 시스템과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 노회록검사시 문제점이 지적 되면 해당 부서에 고지하도록 할 것.

7. 재판국

- 1) 재판국 회의록은 감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8. 은급부

- 1) 은급부 사업 시 책정된 예산이 적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계획을 세워 재정부에 요청할 것.

9. 순교자기념사업부

- 1) 순교자(유족)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요함.
- 2) 순교자기념사업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것.
- 3) 순교자기념사업부와 역사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기에 정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 할 것.

10. 사회부

- 1) 한센인 협회 지원은 국내, 해외와 병행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1. 교육부

- 1) 교육부 행사(사모세미나, 교역자 하기 수양회 등)를 패키지 계약할 경우 인보이스를 참가자와 직원으로 구분해서 지출 할 것.
- 2) 총회에서 평신도 교육원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장로 고시에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장로교육원 및 지방신학교 장로교육을 통해 장로고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지침이 없기에 현장에서 혼선이 있음. 총회가 명백한 지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 평신도 하기수양회를 회기초에 진행하고 특정 장소에서만 하지 말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할 것.

12. 면려부

- 1) 각 노회 면려부와 기독교장년면려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 할 것.

13. 학생지도부

- 1) SCE 활성화를 위하여 각 노회 SCE가 조직될 수 있도록 학생지도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활



등 할 것.

- 2) 수련회 등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권역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세울 것.

14. 신학부

- 1) 신학부 산하의 신학정체성 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 교단 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하므로 이에 신학정체성 위원회가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연구 계획을 토대로 예산 계획을 올릴 것.

15. 전도부

- 1) 전도지원금(도시 미자립교회)이 현실적으로 부족함으로 제107회기에 예산 계획을 올릴 것.
- 2) 전국남전도회와 전국여전도회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주요 행사는 전도부와 협의하여 진행 할 것.
- 3) 전도훈련비와 개발 정책비는 예산 계획에 맞게 잘 집행할 것.

16. 농어촌부

- 1) 수양회에 각 지역별로 인원이 골고루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할 것.
- 2) 농어촌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예산이 부족함으로 예산 증액 요청할 것.
- 3) 수련회(교역자 수련회)시 부족 재정을 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분담하여 농어촌 교회를 섬긴 일은 모범이 된 사례임.

17. 군선교부

- 1) 전국남전도연합회가 진중 세례식을 진행함에 있어 주부서인 군목부와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차후에는 군목부와 협의하여 진행 할 것.
- 2) 군목 수련회 결산 내역을 임원회에서 받은 기록이 누락되었으므로 시정 할 것.
- 3) 부서 행사시 직원 출장에 대한 규정을 통일 할 것.
- 4) 군목부가 군선교부로 변경되면서 군선교사, 군선교사회 2부서가 포함되어야 함.
- 5) 후원금 관리 통장을 반드시 재무부 계좌로 통일하고 회의 자료 기록시 전례대로 하는 표현 보다는 규정대로 할 것.
- 6) 군선교부 예산 중 군선교사회 예산은 전액 군선교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구분하여 청원 할 것.

18. 경목부

- 1) 수입 및 지출의 예산, 결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 할 것.
- 2) 잔액을 현금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3) 회의록 기록상 1차 회의에 조직 명단을 기록 할 것.
- 4) 임원 및 실행위원 조직에서 목사 장로 균등하게 배분 할 것.
- 5) 경찰청 및 경찰서 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일반적인 지역에 편중되었음.
(부산 1건, 전남, 광주 4건, 서울 2건, 제주 1건, 경기 1건, 인천 1건)

19. 구제부

- 1) 특별헌금(구제)은 사전에 청원서를 받아 계획 있게 배분 할 것.

2) 일반 구제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 할 것.

20. 출판부

- 1) 출판 신간 제작 시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차후 제작 시 객관적인 data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요구됨.
- 2) 출판국 매출증대 및 이익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정책과 계획 수립이 필요함.
- 3) 단행본 제작물에 관련하여 재고 관리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주문제작 방식 구축)
- 4) 제작 및 영업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거래처관련 및 사무용품 등)은 출판국 부서 사업비에 서 지출 할 것.
- 5) 인쇄물 보관과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창고 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서고도 시설해 줄 것을 요구 할 것.

□ 상비부 산하 위원회

1. 교정선교위원회

- 1) 은퇴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시정할 것.
- 2) 교정 범위가 방대함으로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정할 것.
- 3) 교정선교위원회의 진행 사항을 전도부에 보고할 것.
- 4) 부족한 재정에 대해 제107회 총회에 예산 계획서를 제출할 것.

2. 이만교회운동본부

- 1) 총회 후 1,2차 교회개척 세미나를 개최하여 90명이 참석하였으나 그중 교회설립예배를 드린 교회는 30개로 파악이 됨. 저조한 이유와 개선할 사항 연구할 것.
- 2) 이만교회 지속을 위해 예산상향이 불가피함.

3. 군선교사회

- 1) 제106회 총회시 군목부와 합병하여 군선교부로 변경되었으나 후속처리가 되고 있지 않음.(규칙수정 및 정관 변경이 필요함)

4. 다음세대운동본부

- 1) 사업이 중복되는 부서(교육부, 학생지도부, 주일학교연합회, 미래전략정책개발위원회)가 있기에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인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연구할 것.

□ 위원회

1. 총회실행위원회

- 1)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 시 소집되어야 하는데 제106회기에 긴급함이 없는 안전에 2회가 소집되었음. 시정할 것.

2. 총회임원회

- 1) 은혜로운동행기도운동 공식 석상에서 각 신학교에 지원하기로 하고 전달식을 하였는데 자금 문제로 지출하지 못함은 총회 권위 실추임. 자금 대책을 세워 일부라도 시행하도록 할 것.



- 2) 특별위원회 선정시 신중을 기해서 문제의 소지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
(경상노회 화해중재위원회 중 일부는 자신의 소속 노회가 화해중재를 거부한 위원을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 3) 기독교신문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의 결의와 달리 임원회에서 명칭 변경으로 혼란과 오해된 점을 인정하고 총회 결의대로 시행할 것.
- 4) 재판 관련 사안 중 한번 부결된 것을 다시 다룬 것은 잘못된 것임.(일사부재의 원칙)
- 5) 임원 및 상비부임원, 특별부서장, 노회서기 연석회의를 통해 총회정책과 운영에 대해 제시함이 바람직함.

□ 총무 사무총장 관련건

- 1) 사무총장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따라 총무(대외)와 사무총장(대내) 업무를 잘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3. 선거관리위원회

□ 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6회 선거를 진행하는 가운데 선거인 명부 없이 선거가 진행되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결국 낙선한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급기야 사법에 고소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총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처하게 되었고 또 총회 일각에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과 특별감사에 대한 여론이 팽배 해지고 선거 관리부실에 대한 제보도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부에서는 제106회 선거과정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회의 결의를 통해 제105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를 총회장께 3번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게 되었다.

3월 정기(중간)감사 기간에도 감사를 거부하고 해당자의 출석도 거부하였으며 제105회 선관위원장 명의로 제106회 감사부장에게 고소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잘못을 시인하고 총회 앞에 사과해도 부족한데, 급전으로 협박공문을 보내서 재차 총회장 면담을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제105회기 선관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제106회기 선관위를 감사하게 되었다. 제106회기 선관위는 아직 활동이 별로 없고 시작하는 단계였지만 서기, 회계, 담당 직원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고, 감사 중 2021년 9월1일 부로 회계 회기기준(당회년도에 속함으로)은 맞지만 9월 1일 부터 106회기 총회까지는 105회기 선관위가 지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105회기 선관위 담당 직원을 불러 확인하고 105회기 선관위 회계를 호출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감사 보고함.

- 1) 일비의 부당지출
회의가 4시간 초과시 일비를 지출하게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데 1시간 회의하고 일비를 지출한 부분이 다수 확인되어 환원함이 마땅하다.
- 2) 전국주교연합회 하계수련회시 이중내지 부당한 추가 지출이 많음. 주교연합회 수련회가 폐기지로 진행되었는데 부당 지출된(여비, 식비 등) 부분은 환원함이 마땅하다.
- 3) 공명선거를 통해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행사에 너무 많은 인원(10명~15명)이 참석하고,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는지 감사가 필요하였으나 회기 문제로 감사하지 못함.
- 4) 정견발표회 과다 지출.
- 5) 제106회 선거 진행.

- 가)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는 명찰을 노회별로 일괄 배분하여 총대에게 명찰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리 투표를 하였는지 명확한 확인이 안됨.
- 나) 선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선거인 명부가 기표소 옆에 비치되지 않아 투표자 확인 없이 기표소에 출입하였고 이에 명찰과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됨.
- 다) 투표 시 출석인원을 확인하고 투표해야 하는데 총회 개회 시 총회서기의 호명인원을 출석인원 기준으로 하여 이후 입장하여 투표에 참석하니 개표인원과 큰 차이가 나는 오류가 있었음.

6)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총평

공명선거감시단이 여러 기관 행사에 참석하는 데는 열심인데 정작 선거관리에 준비나 진행에 매우 부족하였고, 이후의 대처도 매우 부적절했다. 사태의 엄중성을 뒤늦게 깨닫고 제105회 기 선관위가 제106회 제2차 실행위원회 시 현 배광식 총회장을 통해 간접 사과를 했지만, 김종준 위원장 명의로 기독교신문 등 언론을 통해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특별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제107회 총회선거에는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비치하며 본인 대조(총대 명찰과 신분증을 대조)를 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06회기 선거관리위원회

- 1) 총회 시 투개표의 방법을 모든 총대가 동의 할 수 있도록 투표인 명부 준비, 투표 절차 확인, 투개표 참관인 배석 등을 준비하여 총회 전 반드시 모의 투표를 실시하고 보완하여 준비 할 것.
- 2) 선관위원과 재판국원의 후보 등록수를 1.5배로 하는 것은 재검토 할 것.

4. 이단(사이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 1) 세미나 활동 연구의 자료를 총회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총회 산하 교회들이 공유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할 것.

5. 통일준비위원회

- 1) 코로나로 특위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고 예산축소로 삭감이 되어 임원 중심의 행사를 진행함으로 위원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확충 요청할 것.

6. 세계교류협력위원회

- 1) 세계교류협력을 위해 코로나 이전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현실적 사업을 진행할 것.

7. 총회역사위원회

- 1) 각 노회에서 100년 이상된 교회 사적지 지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 2) 학술세미나는 격년제로 시행함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됨.
- 3) 순교자기념사업부와 역사위원회의 사업계획 시 각 부서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통적이고 중복되지 않게 진행할 것.
- 4) 역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특정인들만 하지 않게 하고 순환제로 하되 재임명되지 않도록 할 것.



8.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

- 1) 회의비를 과다 지출함. 예산 내에서 집행할 것.
- 2)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

9.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 1)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본래 목적과 정체성을 확실히 할 것.
- 2) 다음세대운동본부와 중복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3) 미래정책을 수립하여 총회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정책적 자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사료됨.
- 4) 충분한 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보고된 안들이 총회에 모든 기관에 적용되어야 하고 유관기관 상비부와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0. 은혜로운동행기도운동본부

- 1) 은혜로운동행기도회 시 총회장이 작성한 금액을 전액 지원 하지 못함으로 좋은 취지의 후원이 무색하게 되었음. 미지급된 각 기관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양해를 공문으로 전달할 것.
- 2) 백서 출간은 은혜로운동행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기에 적합하지 않음. 출간비용은 후원금으로 지출할 것.
- 3) 은혜로운동행기도회에서 지원 약속된 금액을 지속적인 후원을 요청하여 지원받아 마무리할 것.

11. 화해중재위원회

- 1) 경상노회 분쟁을 권면하고 지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화해중재위원회의 권한과 범위가 불명확함으로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임. 이에 화해중재는 재판국이나 총회임원회가 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됨.
- 2) 경상노회 건에 대하여 A측이나 B측이나 선택 공문을 발송으로 인해 화해가 아닌 분쟁의 요소가 되었음.

12. 재개발특별위원회

- 1) 위원회 활동이 없음.

13. 총회신학원복원편목과정소위원회

- 1) 미주 편목 과정 진행 중 담당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대상이 40명에서 18명으로 갑자기 축소되었지만 정해진 일정은 진행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되었음.
- 2) 총회 예산 규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순서비, 여비 등)이 있음.

14. 기독교신문구조조정처리위원회

- 1) 구조조정 처리위원회는 변경된 명칭 제106회 총회 결의대로 기독교신문구조조정위원회 원안대로 할 것.
- 2) 성과
 - 가) 악성지사 폐쇄
 - 나) 본사와 지사의 광고료 지대 조정
 - 다) 급여조정
 - 라) 국장급 정년조정 만 65세에서 61세

15. 여성사역자지위향상 사역개발위원회

- 1)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여성군목, 여성선교사, 여성 목회 교회개척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2) 여성사역자 은급 가입 문제도 연구되어야 함.

16. 이슬람대책위원회

- 1) 국내 현 상황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많은 유입과 동시에 이슬람에 소속된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광역시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 이슬람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총회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함. 총회이슬람대책위원회는 이슬람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정확한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에 청원 할 것.

17. 위기관리대응위원회

- 1)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대응일지가 잘 정리 되어 있으나 지 노회와 교회에 대한 전달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좋겠다고 사료됨.
- 2) 국가적인 재난과 총회차원에서의 상황 즉 기후 변화에 의한 재난 생태계변화 다음 세대를 포함한 성도들의 인원 감소에 대한 대책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교육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8. 총회준비위원회

- 1) 총회 준비위원회는 총회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중할 것.
- 2) 총회장이 샬롬·부흥을 주제로 제107회기 동안 진행 하고자 하오니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청되며 행사 위주의 계획으로 다른 부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 기관

1. 총회은급재단

- 1) 총회실행위원회가 결의한 연기금의무가입 건에 대한 것은 기금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회에서 총대들의 결의 후 시행할 것.
- 2) 제87회 총회 결의인 기금 비율(경상예산의 0.2%)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음으로 재단 측면에서 재검토 및 연구 요함.
- 3)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회 산하교회들이 연금 가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할 것.

2. 총회유지재단

- 1) 총회회관 리모델링 금액이 초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축소 보고되고 현재 초기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 됨.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금액 내역과 재정충당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 2) 기독교신문 폐간에 대한 대책(폐간 후에 발생될 문제 포함)을 수립할 것.



3. 총회사회복지재단

- 1) 사회복지 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현장 감사가 필요함.

4. 총회교육개발원

- 1) 총회차원에서 하나바이블(하나바이블앱)을 적극 홍보하여 전국 노회와 교회에서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 개발비의 부족분을 제한적인 총회 예산지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할 것.

5. 기독교신문사

- 1) 기독교신문 제호변경에 대하여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상정하여 반드시 처리할 것.
- 2) 편집국은 지방 취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취재기자들을 배정하여 영남지역의 취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아울러 총회의 이슈 및 상황과 각 노회행사, 연합회 및 산하 기관들의 행사를 신속하게 보도함으로 독자들에게 볼거리가 있는 신문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
- 3) 편집국은 미디어팀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기독교신문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4) 채무가 많은 지사(경기동강원지사, 인천지사, 제주지사)는 계약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여 처리 할 것.
- 5) 미지급된 임대료와 총회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 지출 계획을 수립할 것.
- 6) 유지재단에서 독립하는 문제는 고용승계 및 채권승계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총회유지재단과 상호협약하여 기독교신문사가 독자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할 것.

6. 총회교회자립개발원

- 1) 미자립교회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1. 총무시설팀

- 1) 설비관리팀 경비 절감 계획 방안 수립이 요구됨. 정부 정책에 부응되는 신재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적용 필요함.(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절전 계획 도입 등)
- 2) 시설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눈으로 보이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설비 관리 차원에서 설비 효율 향상 방안 계획이 필요함.)
 - * 전기료 절감 방안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적용할 것.(타 대학 견학 및 적용 대학 탐방 필요)
 - * 설비 효율을 위해 TPM 활동 필요.

2. 기독교교육연구소

- 1) 개 교회에서 기독교교육 연구소에 지정 기부금으로 후원을 하고 있으나 본 회기에 지출되지 않았을 때 다음 회기에 이월되지 않고 재정에 편입 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음. 후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월 할 것.

3. 기획혁신팀

- 1) 입시요강이 노회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므로 총회 산하 교회들이 혼선을 빚음. 기독교신문 등을 통하여 공지토록 할 것.(2022년 8월 16일자 기독교신문에 공지 함)
- 2) 피감사가 2021년 11월 부임하여 전반적으로 업무 이해나 파악이 안 되어서 감사에 어려움이 있기에 차기 감사에는 대표자가 나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3) 연간 활동 계획서도 없고 예산서도 너무 피상적임. 수입에 대한 예산 결산이 1/3, 1/4 정도 집계되는 상황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됨.
- 4) 백만인 기도운동 후원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참여노회 95개 노회, 교회 187개 교회/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 및 총회 지도급 인사, 중대형 교회 참여가 저조 함)

4. 재무회계팀

- 1) 중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결과가 타 부서 이관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시정 결과 재 요구함.)
- 2) 직원의 정년 문제 파악을 위하여 생년월일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시정 결과는 파악하고 있다는 진행형이므로 완료형으로 보고토록 재요구 함.
- 3) 기금(6개월 기준/7월말) 418억 5천만원 형성 과정과 내역 및 현재 잔액을 서면으로 요구함.
- 4) 연간 예산(수입, 지출)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회의록을 요구함.
* 재무회계 담당자가 전반적으로 업무 숙지가 미흡함.(답변 요구시 일관된 답변으로 '서류로 제시 하겠다' 하고, '타 부서에 협력 받아 보고 하겠다' 하여 감사 진행에 어려움) 감사시 정확한 답변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업무 숙지 요함.

5. 총신대보사

- 1) 코로나 19로 인해서 신문을 지면으로 발행하지 못함으로 후원금(광고)이 중단되어 재정적인 어려움 발생. 후원금 모금을 적극 독려할 것.

6. 입학개발처

- 1)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신입생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 2) 교수는 매학기 승진 심사를 하고 있으나 직원은 매년 실시로 되어 있는데 시행 되지 않음. 시정할 것.

7. 교육방송국

- 1) 노후 방송장비를 교체할 것. (PC, 콘솔)
- 2)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것.
- 3) 차기 교육방송 예산 계획 및 홍보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세울 것.

8. 대학원 교학 입학팀

- 1) 입학팀(대학원 교학)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총무 인사팀에서 직원을 충원하여 줌으로 원활한 업무 처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함.
- 2)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재학생수를 단순 비교함으로 인하여 차별 지급 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 배정할 것.



9. 개혁신학연구팀

- 1) 예산 확보하여 총회역사박물관과 문서기독교 박물관을 통합하여 양지 캠퍼스 내에 전시실을 확보하여 지 교회와 신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속히 진행할 것.

10. 교회음악연구소

- 1) 대강당 음향시설 및 녹화 시설을 보완해야 함.
- 2) 조교 및 간사의 적절한 대우를 해 줄 것.

11. 교회선교연구소

- 1) 향후 각 기관의 책임자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2)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감사를 진행 할 수 없음. 연구소 존폐 여부를 고려해야 할 사항임.

12. 종합관식당

- 1) 영양사 처우 개선이 필요함.(정규직 전환)

13. 전산정보팀

- 1) 전산팀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으므로 직원채용을 서두를 것.

14. 중앙도서관

- 1) 사서 부족 인원 충원 할 것.

15. 법인사무국

- 1) 재단이사 증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 빠른 시일 내에 증원 할 것.
- 2) 교육부로부터 지적당한 창원부지, 양지캠퍼스 부지들의 정리를 잘 준비 할 것.
- 3) 이00 목사의 본 교단 여성 안수에 대한 내용을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 조치 할 것.

16. 사당평생교육원

- 1) 학점 은행제 과정 중 신학 전공자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들 중에는 무시협으로 총신신학대학원에 매년 3명씩 입학하고 목회하시는 분으로 타 전공자에 비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함.
- 2) 제출된 자료가 피상적임. 보다 상세한 자료가 요구됨. 학점 은행제의 경우 신학전공자 과정 전문 교육 아카데미의 경우 그리스도 신부훈련(cbt) 과정의 커리큘럼 강의안 내용을 상세히 제출 바람.

17. 산학협력단

- 1)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있어서 계약직 직원 1명이 관리하는 문제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에 제한이 있음. 정직원 채용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음. 이에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정직원 채용을 할 것.

18. 교무인사팀

- 1) 회기 중에 발생한 퇴직자 및 신규 임용자 현황을 감사 자료에 첨부 할 것.

19. 섬김 교목팀(교목실)

- 1) 기숙사 사목의 정년퇴직으로 섬김 교목팀 교목이 겸임하고 있는데 속히 기숙사 사목을 청빙 할 것.
- 2) 기숙사 사목(목사)이 2년 전 행정조직 개편으로 시설 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조직 편재되어 있는데 교목실 소속으로 재조정 할 것.

20. 사당생활관

- 1) 남녀 생활관 시설 관리 부분 노후로 안전 진단 및 수리가 필요함. 이를 위한 재정 계획(신축 포함)을 다각적으로 수립할 것.

21. 계약학과

- 1) 차기 감사에는 전임교수 4인 직원 급여 명세서를 보고 할 것.
- 2) 계약학과 지속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할 것.

□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1. 신학대학원 교무입학팀

- 1)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것.

2. 양지시설지원팀

- 1) 직원 이력서가 없음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꼭 첨부 할 것.
- 2) 광범위한 양지 시설 관리를 4명(용역인원)의 인원이 관리 하는 것은 역부족임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할 것.

3. 성지언어연구소

- 1) 직원채용을 총무팀과 협의 중이라 하여 추후 감사 시 확인 하도록 하다.
- 2) 로고스 총신 패키지 프로그램을 재학생 및 졸업생 목회자들이 구입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전무한 상황임. 각 노회 및 서기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적극 홍보하도록 할 것.
- 3) 성경원문 특강을 노회에서 요청 하였을 때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중간감사 지적 사항) 실제로 각 노회에 홍보가 안 되고 있음. 이에 각 노회 및 서기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하도록 할 것.

4. 양지생활관

- 1) 정규직 1명과 용역인원(남4, 여5명)으로 청소 시설관리 행정업무를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여 생활관 학생들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인원증원이 필요함.
- 2) 2003년 건축한 시설에 냉, 난방 시설 및 전자 기기 등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안전을 위해 교체 할 것.



5. 총신원보사

- 1) 현재 원보사 기자재(카메라, 컴퓨터)가 많이 노후화되어 원보 발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기자재를 속히 교체 할 것.

6. 신학대학원 경건훈련팀

- 1) 글로벌 학생들이 졸업 후 강도사 고시를 볼 때 학생 배려차원에서 영어로 고시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신설하고(영어시험, 통역자 배석) 시기적으로 졸업 후 곧장 귀국 할 수가 있으므로 졸업 후 고시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제107회 총회 시 건의 하도록 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1. 훈련원

- 1) 선교사 훈련에 대한 계획은 잘 수립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없음으로 시정 할 것.
- 2) 미 교육자에 동영상 수업이나 교육 책자를 송부하여 리포트로 대신 할 것.
 - LMTC 훈련원 1인 수료비 30,000원에 대한 중간감사 지적사항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차 시정을 요청함(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원

- 1) 외부감사 업체 선정, 보험사 선정 등을 투명하게 하여 예산을 확연히 절감한 부분은 모범 사례임.
- 2) 임원 출마자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상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함으로 별도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것.
- 3) GMS 대여금 6억원이 복지법인은 후원금으로 처리되어 경상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됨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자구책을 강구할 것.
- 4) 신분 보장원칙에 「본부직원의 신분 보장과 인사관리는 국가가 정한 노동법, 본회의 노동법 및 본회의 운영 규칙과 운영 세칙에 의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원의 정년은 50세로 되어있음. 직원의 정년을 총회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할 것. 또한 노동법 참조하여 운영규정 및 세칙을 검토 할 것.
- 5) 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 재정 확보가 필요함.(6-1호봉 임금 1,300,000원부터 시작함/최저임금 월 1,914,440원)
- 6) GMS 관리를 위해 장기 총당금 및 기금 적립 확보가 필요함.

3. GMS 사회복지 법인

- 1) 2018, 2019년 총회세계선교회로부터 차입한 6억에 대한 대책(환원)을 수립 할 것.
 - 가) 2018년 차입한 2억원은 GMS에 차용증이 있음. 하지만 복지법인은 후원금 통장에 입금되어 후원 처리됨을 확인함.
 - 나) 2019년 4억원 중 1억원은 시설 및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3억원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음. 차용증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한 사실 관계 및 대책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함.
- 2) 요양원에 현재 직원이 20명이며 입소자는 23명 임. 입소자가 26명 이상이 되어야 손익 분기점이 됨으로 현재는 적자 운영되고 있음. 흑자 전환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요구됨. 지역

광고 및 기독교신문 광고, 건강보험 공단 가산점 획득, 교단 내지인 모집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 포함.

□ 산하속회

1. 전국주일학교연합회

- 1) 교사 세미나 강사로 전문 강사를 선임 할 것.
- 2)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육하는 계획을 세울 것.
- 3) 다음세대 운동본부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2. 전국여전도회연합회

- 1) 코로나 관계로 이해는 되지만 예산대비 실적이 43.3% 이므로 차기 회기에는 참고하여 적정 예산을 세울 것.
- 2) 귀 회가 소유한 부동산 내역이 자산에 누락이 되었기에 차기 감사 시 보고할 것.
- 3) 직원 퇴직적립금 미납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4) 부족한 예산에도 전도사님의 국내 해외 군선교에 적극 실천함을 격려함.
- 5)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 할 것.

3. 전국청장년면려회

- 1) 총회 157개 노회 중 34개 노회는 적극 참여하고, 50개 노회는 조직이 되었으나 활동이 미비함. 청장년 면려회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총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여 건의 할 것.

4. 전국남전도회연합회

- 1) 모든 행사는 계획된 대로 시행 하고, 전도부와 사전 협의 할 것.(연무대 진중세례식으로 추정된 예산으로 행사가 취소되니 산하 군목들에게 위임하고, 계획에 없는 ROTC 훈련생 행사를 진행하여 예산을 집행함은 옳지 않음.)
- 2) 행사시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여 진행 할 것.(진중세례식-군목부와 협의)
- 3) 향후 총회 지원 없이 남전도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적정 규모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 할 것.